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19

발의연월일: 2020. 9. 8.

발 의 자: 송옥주・양정숙・김영주

송재호ㆍ아주진비ㆍ윤미향

박성준 · 김민철 · 전혜숙

노웅래 · 김종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로부터 시설의 유지나 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 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저수지와 같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아 산책로 및 시민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 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를 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제3항 단서 신설). 법률 제 호
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 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	제23조(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
허가) ①・② (생 략)	허가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	③
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	
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	
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	
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	
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	
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. <u><단</u>	<u>다만,</u>
<u>서 신설></u>	<u>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</u>
	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
	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
	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
	있다.
④・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